

## 알콜·약물사용장애 치료에 대한 보장 강화가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송윤아 연구위원

Popovici(2017)는 알콜·약물사용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 교통사고의 해결방안으로, 음주·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만성적이고 중독성이 있는 알콜·약물사용장애 치료에 대해 경제적 접근성 제고가 필요 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1988~2010년 기간 동안 미국 다수의 주는 보험회사가 정신건강치료에 대해 신체건강치료와 동등한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도록 규정함. 이로 인해 알콜·약물사용장애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결국 교통사고 치사율이 감소함.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알콜·약물사용장애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교통안전을 위해 알콜·약물사용장애 환자의 사회적·경제적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Popovici(2017)는 음주 및 약물 운전에 대해 처벌로서만 접근하기보다는 만성적이고 중독성이 있는 알콜·약물사용장애의 치료에 대해 경제적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 미국에서 교통사고는 전체 부상 관련 사망의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의 1/3 인 10,000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고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20% 이상이 향정신성약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 연구는 미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알콜·약물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 이하 'SUD')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강화가 교통사고 치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미국 다수의 주는 「정신건강동등성법」(Mental Health Parity Act)을 제정하여 보험회사가 정신건강치료에 대해 신체건강치료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SUD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함
  - SUD치료를 희망하는 환자들은 사회적 낙인효과와 치료비용부담 및 보험담보부족 때문에 SUD치료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음
    - 정신건강동등성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정신건강치료에 대한 보장범위가 신체건강치료에 비해

협소하여 SUD치료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컸음

- 정신건강치료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다수의 주정부는 정신건강동등성법을 제정하여 건강보험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도 다른 건강 상태나 질병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의 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함
  - 즉, 보험회사는 정신건강치료에 대한 보장범위, 즉 공제금액, 사전승인여부, 연간·종신 의료서 비스 이용한도 등을 신체건강치료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함
- 1988~2010년 기간 동안 27개 주에서 정신건강동등성법을 채택하였으며, SUD치료에 대한 실제 보장범위는 주별로 다소 상이함
  - 정신건강치료에 대한 보장범위는 신체부상치료와 동일한 완전동등급여(full parity), 정신건강 치료에 대해 최소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는 의무급여(mandated benefit), 피보험자가 추가 보험 료를 대가로 SUD치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의무제안(mandated offer) 등 3가지로 구분 가 능함
  - 동 기간 정신건강동등성법을 채택한 27개주 중 10개주가 완전동등급여를, 9개주가 의무급여를, 8개주가 의무제안방식을 적용함
- Azzone et al.(2011) 등 다수의 연구는 정신건강동등성법이 통과되어 정신건강치료에 대한 보장 이 강화되자 SUD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였음을 입증함

## ■ 분석결과 미국에서는 정신건강치료에 대한 보장성이 높을수록 주말 교통사고 치사율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SUD 환자에 의한 치명적 교통사고 발생의 감소를 의미함

- Popovici(2017)는 SUD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이 강화되어 SUD환자에 대한 치료가 증가하면 음주·약물 운전이 감소하여 주말과 심야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추론함
  - 이러한 추론은 주말과 심야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알콜 및 약물 운전과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Dee 1998)에 근거함
- 이 연구는 주말과 심야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이 높아 다른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에 비해 정신건강동등성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검증함
- 분석결과. SUD치료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주말 교통사고 치사율이 낮게 나타남
  - 정신건강동등성법의 도입으로 인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1~5.1% 감소함
  - 교통사고 치사율을 보장수준별로 살펴보면, 완전동등급여의 경우 10만 명당 18.88명, 의무급 여방식의 경우 22.71명, 의무제안방식의 경우 27.76명임
  - 완전동등급여를 보장하는 정신건강동등성법을 채택한 주는 주말사고가 8.7% 감소하였고, 보장 범위에 상관없이 정신건강동등성법을 채택한 주는 주말사고가 6.8% 감소함

- 이 연구는 알콜·약물사용장애로 인한 치명적 교통사고의 해결방안으로, 음주·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SUD치료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을 시사함
  - 우리나라에서도 알콜·약물사용장애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알콜사용장애 추정환자 수는 2011년 기준 159만 명으로,¹) 2008~2012년 기간 동안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 관련 취소자 비율은 5년간 59.3%, 운전면허 재취득자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 허가 정지 · 취소된 비율은 30.2%임²)
    - 또한 2015년 한 해 단속된 마약류사범은 사상 최대인 1만 1,916명으로, 약물의 영향하에서 운전 및 약물복용과 관련된 교통사고 건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sup>3)</sup>
  - 음주 및 약물 운전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로 혈중알콜농도규제, 벌금, 징역, 면허정지 등과 같은 처 벌방식이 논의됨
  - Popovici(2017)는 알콜·약물사용장애는 만성적이고 중독성이 있는 질환으로, 교통안전을 위해 음주·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에만 집중하기보다는 SUD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kiqi

## 참고문헌



대검찰청(2016),「2015 마약류 범죄 백서」 보건복지부(2011),「정신질환자 실태조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2014),「음주운전의 상습성 실태와 대책」

Azzone, V., Frank, R. G., Normand, S.-L. T., & Burnam, M. A.(2011), "Effect of Insurance Parity on Substance Abuse Treatment", Psychiatric Services, 62(2), pp. 129~134

Dee, T. S.(1998), "Reconsidering the Effects of Seat Belt Laws and Their Enforcement Statu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30(1)

Popovici, I.,(2017), "The Effects of Health Insurance Parity Laws for Substance Use Disorder Treatment on Traffic Fatalities: Evidence of Unintended Benefits", NBER Working Paper, No. 23388

<sup>1)</sup> 보건복지부(2011)

<sup>2)</sup>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2014)

<sup>3)</sup> 대검찰청(2016)